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173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전재수·허 영·추미애

위성곤 • 강유정 • 이학영

김재원 • 이기헌 • 민형배

채현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장려 및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 호 및 제5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를 "6세"로,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출산이나 6세"를 "6세"로,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 내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머. <u>6세</u>			
<u>출산이나 6세</u>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u>30만원</u>			
받는 급여로서 월 <u>20만원</u>				
이내의 금액				
버. ~ 저. (생 략)	버. ~ 저.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u>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일부			
	터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			
	터 받는 급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5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
 - 1) ~ 3) (생략)
 -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 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

5) (생략)

<신 설>

자. (생략)

}
4) <u>6세</u>
30만원
5) (현행과 같음)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련하여 출산일부터 2년

이내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자. (현행과 같음)